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197호 2016. 8. 3(수)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10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05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 - 10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8. 3.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5대사무 이관에 따른 경제청 이체인력 반영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연구직 정원 반영

####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948명 ⇒ 953명 (증 5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 반 직 : 945명 ⇒ 949명 (증 4명)
    - 6급이하 : 878명 ⇒ 882명 (증 4명)
  - 연 구 직 : 0명 ⇒ 1명 (증 1명)
    - 연구사 : 0명 ⇒ 1명 (증 1명)

※ 추가소요 인건비 : 197,949천원 (내역 별첨)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개정이유

- 5대사무 이관에 따른 경제청 이체인력 반영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연구직 정원 반영

###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948명 ⇒ 953명 (증 5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 반 직 : 945명 ⇒ 949명 (증 4명)
    - 6급이하 : 878명 ⇒ 882명 (증 4명)
  - 연 구 직 : 0명 ⇒ 1명 (증 1명)
    - 연구사 : 0명 ⇒ 1명 (증 1명)

###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별지 비용추계서 참조”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948”을 “95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30”을 “935”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3% 이내	34% 이내	30% 이내	5%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 율	3%이내	97%이상

###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7% 이내	30% 이내	40% 이내	13% 이상	10% 이상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u>953</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949</u>	-				
3급	1	1				
4급	6	4	1	1		
5급	60	30	2	6	1	21
6급 이하 계	<u>882</u>	-				
연구직 계	<u>1</u>	-				
연구사	<u>1</u>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	-				
6급 상당 이하 계	2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b>948</b>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b>930</b>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p> <p>[별표 2] <u>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장기준</u>(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 (생 략)</p> <p><u>〈신 설〉</u></p>  <p><u>2. 별정직공무원</u>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b>953</b> ----- -----.</p> <p>1. -----: <b>935</b>----- 2. -----</p> <p>[별표 2] <u>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장기준</u>(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 (현행과 같음)</p> <p><u>2. 연구직공무원</u></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padding: 5px;">구분</th> <th colspan="2" style="padding: 5px;">연구직</th> </tr> <tr> <th style="padding: 5px;">연구관</th> <th style="padding: 5px;">연구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비율</td> <td style="padding: 5px;">3%이내</td> <td style="padding: 5px;">97%이상</td> </tr> </tbody> </table>  <p><u>3. 별정직공무원</u> (현행과 같음)</p>	구분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율	3%이내	97%이상
구분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율	3%이내	97%이상							

현	개																																																																																																																																																																																						
행	정																																																																																																																																																																																						
안	안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의회 사무 기구</th> <th style="text-align: center;">직속 기관</th> <th style="text-align: center;">출장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동</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948</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무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청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945</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급 이하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878</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별정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급 상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급상당이하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 계	948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45	-					3급	1	1					4급	6	4	1	1			5급	60	30	2	6	1	21	6급 이하 계	878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	-					6급상당이하 계	2	-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의회 사무 기구</th> <th style="text-align: center;">직속 기관</th> <th style="text-align: center;">출장 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동</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953</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무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청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949</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급 이하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882</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별정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급 상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급상당이하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출장 소	동	총 계	95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49	-					3급	1	1					4급	6	4	1	1			5급	60	30	2	6	1	21	6급 이하 계	882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	-					6급상당이하 계	2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 계	948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45	-																																																																																																																																																																																					
3급	1	1																																																																																																																																																																																					
4급	6	4	1	1																																																																																																																																																																																			
5급	60	30	2	6	1	21																																																																																																																																																																																	
6급 이하 계	878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	-																																																																																																																																																																																					
6급상당이하 계	2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출장 소	동																																																																																																																																																																																	
총 계	95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49	-																																																																																																																																																																																					
3급	1	1																																																																																																																																																																																					
4급	6	4	1	1																																																																																																																																																																																			
5급	60	30	2	6	1	21																																																																																																																																																																																	
6급 이하 계	882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	-																																																																																																																																																																																					
6급상당이하 계	2	-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개정이유

- 5대사무 이관에 따른 경제청 이체인력 반영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및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반영

### 3. 주요내용

-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별표 1)
  - 총 정원 : 948명 ⇒ 953명 (증 5명)
  - 일반직 : 945명 ⇒ 949명 (증 4명)
    - 6급 : 215명 ⇒ 216명 (증 1명)
    - 7급 : 317명 ⇒ 319명 (증 2명)
    - 9급 : 74명 ⇒ 75명 (증 1명)
  - 연구 직 : 0명 ⇒ 1명 (증 1명)
    - 연구사 : 0명 ⇒ 1명 (증 1명)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안 별표 2)
  - 총 정원 : 총 3명(일반직, 행정9급 2, 사회복지 1명)

###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별지 비용추계서 참조”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을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 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u>별표와</u> 같다.</p> <p><u>&lt;신 설&gt;</u></p>	<p>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 -----<u>별표 1과</u> --.</p> <p>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 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 시 서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을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 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 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u>별표 2와</u> 같다.</p>

## 비용소요 추계서

(단위 : 원, 명, 월)

구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고
		내역	단가	인원	비율 등	월(회)수	계	
총계	197,948,158							
1. 인건비	175,108,608							
가. 기본급	138,662,400	○ 4급(연봉제)	80,411,000					
		○ 5급(30호봉)	4,238,100			12		
		○ 6급(23호봉)	3,499,000			12	0	
		○ 7급(13호봉)	2,584,200	3		12	93,031,200	
		○ 8급(8호봉)	1,901,300	2		12	45,631,200	
		○ 9급(3호봉)	1,418,300			12	0	
							0	
나. 상여금	9,706,368	○ 정근수당	138,662,400	5	0.08	2	9,706,368	90%평균
다. 정액수당	26,739,840							
1)가족수당	1,833,600	○ 배우자	40,000	3	0.78	12	1,123,200	
		○ 존비속	20,000	2	1.48	12	710,400	
2)정근수당가산금	3,240,000	○ 25년 이상	130,000			12	0	
		○ 20년~25년미만	110,000			12	0	
		○ 15년~20년미만	80,000			12	0	
		○ 10년~15년미만	60,000	2		12	1,440,000	
		○ 5년~10년미만	50,000	3		12	1,800,000	
3) 정액급식비	7,800,000	○ 일반직	130,000	5		12	7,800,000	
4) 명절휴가비	13,866,240	○ 명절휴가	138,662,400		0.05	2	13,866,240	
2. 직무수행경비	7,560,000							
가. 직책급업무추진비	0	○ 4급	350,000			12	0	
		○ 5급	100,000			12	0	
나. 직급보조비	7,560,000	○ 4급	400,000			12	0	
		○ 5급	250,000			12	0	
		○ 6급	155,000			12	0	
		○ 7급	140,000	3		12	5,040,000	
		○ 8급	105,000	2		12	2,520,000	
		○ 9급	105,000			12	0	
3. 포상금	15,279,550							
가. 성과상여금	15,279,550	○ 5급~9급	3,055,910	5		1	15,279,550	

- 주1) 소요비용 계 중 상여금,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등은 1인 단가가 아님에 유의  
 2) 산출근거별 단가는 매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동됨  
 3) 수당 중 위험근무, 대우공무원, 관리업무, 특수업무, 민원업무, 전산업무, 장려, 의회사무, 의료업무, 등근무, 사회복지업무,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

[별표 1]

##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총 계		953	614	18	46	16	33	226	(11)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949	610	18	46	16	33	226	(11)
3급 소계		1	1						
부 이 사 관		1	1						
4급 소계		6	4	1	1				
서 기 관		2	1	1					
기 술 서 기 관		2	1		1				
서 기관·기술서기관		2	2						
5급 소계		60	30	2	4	2	1	21	
행 정		14	12	2					
의 무		3			2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4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1	1						
행 정 · 시 설		7	7						
행 정 · 사 회 복 지 · 공 업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농 업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녹 지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보 건		3						3	
행 정 · 사 회 복 지 · 환 경		3						3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공 업 · 농 업		3	1					2	
행 정 · 녹 지 · 보 건		1						1	
행 정 · 녹 지 · 시 설		2	1					1	
행 정 · 보 건 · 환 경		1	1						
행 정 · 보 건 · 시 설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의 무 · 보 건 · 간 호	1				1			
	행 정 · 공 업 · 농 업 · 시 설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 의 료 기 술	1			1				
	보 건 · 간 호 · 의 료 기 술 · 약 무	1			1				
	<b>6급 소계</b>	<b>216</b>	<b>159</b>	<b>4</b>	<b>12</b>	<b>4</b>	<b>6</b>	<b>31</b>	
	행 정	94	71	3			1	19	
	세 무	7	7						
	전 산	1	1						
	사 회 복 지	7	7						
	공 업	6	6						
	농 업	1	1						
	녹 지	4	4						
	수 의	1	1						
	보 건	4	3		1				
	의 료 기 술	2			2				
	간 호	4			3	1			
	환 경	6	6						
	시 설	18	16				2		
	방 송 통 신	1	1						
	운 전	5	3	1				1	
	기 계 운 영	1	1						
	행 정 · 세 무	6	6						
	행 정 · 사 회 복 지	15	5					10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농 업	2					1	1	
	행 정 · 보 건	3	2				1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8	8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녹 지 · 시 설	1	1						
	간 호 · 의 료 기 술	2			1	1			
	행 정 · 공 업 · 시 설	2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행정 · 보건 · 간호			1			1				
행정 · 보건 · 환경			2	2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4			3	1			
행정 ·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1				1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 약무			1			1				
7급 소계			319	211	6	15	6	15	66	(2)
행 정	정	111	65	3				2	41	(2)
세 무	무	29	28					1		
전 산	산	4	4							
사 회 복 지	지	28	22						6	
속 기	기	2		2						
공 업	업	11	9					2		
농 업	업	2	1					1		
녹 지	지	6	6							
해 양 수 산	산	1	1							
보 건	건	17	11			4	1	1		
의 료 기 술	술	4				3	1			
간 호	호	6				5	1			
환 경	경	11	11							
시 설	설	42	37					5		
방 재 안 전	전	1	1							
방 송 통 신	신	3	3							
운 전	전	17	3			1		1	12	
전 화 상 담 운 영	영	1	1							
기 계 운 영	영	2	2							
사 무 운 영	영	9	2	1				2	4	
행 정 · 사 회 복 지	지	6	3						3	
보 건 · 간 호	호	1				1				
수 의 · 농 업	업	1	1							
의료기술 · 식품위생		2				1	1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2					2			
8급 소계			272	171	4	13	3	11	70	(7)
행 정	정	115	70	2		1			42	(7)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세	무	13	12				1		
전	산	3	3						
사	회 복 지	38	18					20	
공	업	5	5						
농	업	1	1						
녹	지	6	6						
보	건	9	5		2		2		
의	료 기 술	1				1			
간	호	5			4	1			
환	경	12	12						
시	설	34	28				6		
방	송 통 신	3	3						
운	전	10	2	1	1		1	5	
전	화 상 담 운 영	1	1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3	1	1	1				
전 산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3	1					2	
행 정 · 농 업		1						1	
보 건 · 공 업		1	1						
보 건 · 간 호		1			1				
의 료 기 술 · 식 품 위 생		1				1			
환 경 · 공 업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 식 품 위 생		3			3				
9급 소계		75	34	1	1	1		38	(2)
행	정	36	12	1				23	(2)
세	무	5	5						
사	회 복 지	22	6		1			15	
공	업	1	1						
녹	지	1	1						
보	건	1				1			
환	경	2	2						
시	설	4	4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사무 운영	2	2						
	행정 · 환경	1	1						
	연구 직 계	1	1						
	기록 연구 사	1	1						
	별 정 직 계	2	2						
	6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별표 2]

인천광역시 서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총 계	3	3						
일 반 직 계	3	3						
9급 소계	3	3						
행 정	2	2						
세 무								
사 회 복 지	1	1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105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3.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2016년 복지허브화 관련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 본청과 검단출장소 세무 업무 통합에 따른 사무조정
- 변경사무 정비

#### 2. 주요내용

- 명칭변경 : 총 2개소
  - 석남1동 주민센터 ⇒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 검단1동 주민센터 ⇒ 검단1동 행정복지센터
- 사무조정
  - 세무업무 본청 통합에 따른 출장소 사무 조정
  - 오수관리 업무 : 자원순환과 ⇒ 환경보전과
  - 기타 신설·폐지 및 변경 사무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개정이유

- 2016년 복지허브화 관련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 본청과 검단출장소 세무 업무 통합에 따른 사무조정

### 3. 주요내용

- 명칭변경 : 총 2개소
  - 석남1동 주민센터 ⇒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 검단1동 주민센터 ⇒ 검단1동 행정복지센터
- 사무조정
  - 출장소 사무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세무관련 업무 삭제
  - 세무민원상담 및 민원발급 사항 추가

###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세무관련 상담 및 제증명 발급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4)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인천광역시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 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연희동)	
청라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경서동)	
청라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5(경서동)	
가정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20(가정동)	
가정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17(가정동)	
가정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u>석남1동 행정복지센터</u>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석남동)	
석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 4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u>검단1동 행정복지센터</u>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마전동)	
검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검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검단 4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검단 5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오류동)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 4. (생   략)</p> <p>5. <u>사업소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 토지세 업무</u></p> <p>6. <u>자동차세, 농지세, 취득세, 등 록세업무</u></p> <p>7. ~ 13.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17조(소관사무)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lt;삭   제&gt;</u></p> <p>6. <u>&lt;삭   제&gt;</u></p> <p>7. ~ 13. (현행과 같음)</p> <p><u>14. 세무관련 민원상담 및 제증명 발급</u></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4]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p>		<p>[별표 4]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p>		
구분	소재지	구분	소재지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연희동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연희동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연희동)	청라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연희동)	
청라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 (경서동)	청라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 (경서동)	
청라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5(경서동)	청라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5(경서동)	
가정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20(가정동)	가정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20(가정동)	
가정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17 (가정동)	가정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17 (가정동)	
가정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 (가정동)	가정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 (가정동)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 (신현동)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 (신현동)	
석남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 (석남동)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 (석남동)	
석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석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 (가좌동)	가좌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 (가좌동)	
가좌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 (가좌동)	가좌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 (가좌동)	
가좌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 (가좌동)	가좌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 (가좌동)	
가좌 4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 (가좌동)	가좌 4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 (가좌동)	
검단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 (마전동)	검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 (마전동)	
검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검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검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검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검단 4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 (당하동)	검단 4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 (당하동)	
검단 5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오류동)	검단 5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오류동)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개정이유

- 사무 조정 및 업무 통합에 따른 부서별 사무정비

### 3. 주요내용

- 사무조정
  - 세무업무 본청 통합에 따른 출장소 사무 조정
  - 오수관리 업무 : 자원순환과 ⇒ 환경보전과
  - 기타 신설·폐지 및 변경 사무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예산실,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분장사무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 획 예 산 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4. 지시사항 처리총괄(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등)
	5. 공무원 관내외 출장·통제
	6. 기구직제 및 정원관리
	7. 기구 및 정원조정
	8. 조직 및 인력진단
	9. 사무이양 및 위임전결
	10. 주간, 월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11. 구의회 운영 지원
	12.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업무
	13.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14. 의회운영상황 동향 보고
	15. 의회운영 및 제도개선 요구
	16. 행정자료실 운영
	17. 구정 특수시책 개발 및 추진
	18. 구정업무 연구 연찬
	19. 구민아이디어 제안 접수 및 개발
	20. 구정시책 발굴 및 평가
	21. 구정 청사진개발 및 비전제시
	22. 구정장 공약사항 추진총괄 및 확인평가
	23.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 체결
	24. 해외사절단 파견 등 계획 수립
	25. 외국 또는 외국기관과의 섭외
	26. 국제자매도시 협의회 운영
	27.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28.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29. 총괄 기금 관리
	30. 세출예산 연간배정계획 수립
	31. 분기별, 월별 예산배정 및 재배정

부 서 명	분 장 사 무
	32. 재정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운영
	33. 재원조정교부금 관리
	34. 지방채, 일시차입금, 조상충용충담금, 채무부담행위 조정
	35.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에 관한 사항
	36. 국고보조금 신청
	37. 세입·세출 실행예산 편성
	38. 예비비 지출 및 승인요구
	39. 지방채 발행 및 승인요구
	40. 명시이월사업 승인요구
	41. 교육예산 지원 승인요구
	42. 세출예산 이체
	43. 세출예산 이용
	44. 세출예산 전용
	45. 세입세출예산 성립전 경비 사용
	46.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47. 기금출연 및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
	48. 구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49. 조례, 규칙, 예규, 훈령의 제·개정, 폐지 및 심사 공포
	50. 고시, 공고, 예규, 훈령 등 중요문서의 심사
	51. 법제자료의 조사 수집연구
	52.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
	53.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54. 구 자치법규 및 예규문서 편찬 간행
	55.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56.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57. 소송사건 처리 결과의 심사 및 조사연구
	58.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59. 법률고문 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60. 공탁금 지출 및 회수
	61.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62. 통계기준의 설정 및 조정
	63. 통계분석 및 통계작성의 통제
	64. 통계의 분석 공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65.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간행물 발간
	66. 도·소매인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67. 인구주택 총조사
	68. 한국도시연감 자료수집
	69. 인천사회지표 통계조사
	70.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71. 지역내총생산(GRDP)추계 자료조사
	72. 광공업 통계조사
	73. 산업총조사
	74. 고용구조 통계조사
	75. 기타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76. 통신종합계획 수립시행
	77. FAX 시설운영 유지관리
	78. 행정 방송시설 운영 유지관리
	79. 통신보안 관리
	80. 각종 통신회선(행정통신, 전산회선 등)의 통합관리
	81. 구분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 개발계획 수립 시행
	82. 통신기술 교육 훈련
	83.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준공
	84. 기타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
	85.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운영관리
	86.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 추진
	87. 지역특화사업 추진
	88. 사업별 예산 편성 운영
	89. 사업별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90. 시설관리공단 총괄관리 및 지휘감독
	91. 구정현안에 대한 전략사업 추진
	92. 국·시책사업 현안사항 관리
	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나.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라.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
	마. 가정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바.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사. 서울지하철7호선 건설사업
	93. 국·시책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협의(완료된 사업 제외)	

## 구 분 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환 경 보 전 과	1.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수리
	2. 무허가배출업소 지도단속
	3.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4.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5. 각종 중규모사업의 환경성 검토
	6.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7. 환경기술인 교육
	8. 환경보전 대구민 홍보
	9.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운영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11. 환경관리 민원처리
	12.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조사
	13. 토양오염 실태조사
	14. 생활소음 관리
	15.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계획 수립
	16.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고발,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17.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18.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
	19. 하천오염행위 단속
	20.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21. 환경 사회복무요원관리
	2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리
	23. 환경관련 오염도검사자료 관리
	24. 환경관련 진정민원 처리
	25. 대기·수질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26. 환경재난방지계획 수립 시행
	27. 악취 배출업소 지도점검
	28. 비산먼지 억제 중장기 대책 및 시행
	29. 수질·대기·환경오염자동측정망(TMS)운영
	30. 특정공사 사전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31. 배출·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수리
	32. 환경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33.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연안해양 포함)
	34. 하천 오염도 검사
	35.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36. 중수도에 관한 사항
	37. 저수조청소업 신고에 관한 사항
	38. 환경관련 정책, 시책, 현안사항 업무
	39. 환경사범 수사 업무
	40.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41. 자동차공회전 단속
	42.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3.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신고
	44. 이륜자동차검사 및 연장(유예)
	45.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
	46. 절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47.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48. 냉·온수기,정수기 설치관리자 지도·점검
	49.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수리
	50. 악취배출업체 지도점검 및 고발, 행정처분
	51. 악취관리지역 관리
	52. 악취관리지역외 악취발생시설 관리
	53. 악취저감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54. 석면안전관리
	55. 석면피해구제
	56. 생물다양성관리사업
	57. 유해조수포획허가 및 수렵면허
	58. 야생동물 구호
	59.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60. 환경오염종합상황실 운영
	61. 기후변화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62.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63. 탄소포인트제 가입 추진(전기, 수도)
	64. 녹색구매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업무
	65. 기후환경네트워크 관련 업무 추진
	66.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부 서 명	분 장 사 무
	67. 그린리더 양성 및 운영관리
	68. 자동차/이륜자동차 정비사업장지정 업무
	69.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7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7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
	72.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관리
	7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협의 및 준공검사
	74.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감독
	75. 개방화장실 지도 점검
	76. 재래식 화장실 개량 추진
	77.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 구 분 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자 원 순 환 과	1.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2.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3.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지도감독
	4. 환경미화원 관리
	5. 도로청소 및 청소차량 관리
	6. 청소장비 개선 및 관리
	7. 쓰레기종량제 추진
	8.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계약
	9. 생활쓰레기 수집·수수료 관리
	10. 재활용품의 회수처리 및 실적관리
	11. 재활용선별보관장 및 쓰레기선별처리장 운영
	12.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사업계봉투 관련업무
	13. 재활용 촉진 및 관련업무
	14. 의류 수거함 관리에 관한 사항
	15.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및 단속
	16.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관련업무
	17.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관련업무
	18.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변경)
	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변경)
	20.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 및 처리실적보고
	21.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관련 업무
	22.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신고(변경)
	2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고(변경)
	24. 지정(감염성)폐기물 처리증명 확인(변경포함)
	25. 폐기물 연간 지도·단속 종합계획 수립
	26. 방치폐기물, 순환골재 관련업무
	27.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행정처분
	28.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업체 지도·점검
	29. 사업장 일반 및 건설폐기물관련 각종 민원처리
	30.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변경) 관련 업무
	3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 지도·점검
	32.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부 서 명	분 장 사 무
	33.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고(변경)
	34. 폐기물 전자인계서 관리 및 행정처분
	35. 폐기물 처리신고(변경)
	36.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 지도·점검
	37. 고품연료 제품 제조신고(변경)
	38.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39.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책 사업 추진
	40.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 계약
	41. 화분형 거치대 관련 업무
	42. 음식물류폐기물 해외수입 징수
	43.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바코드 제작 업무
	44.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45. 음식물류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리
	46. 음식물류폐기물 물류시스템 유지·관리
	47. 음식물류폐기물 대행료 지급
	48. 소규모 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49.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 업무
	50.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이행계획 신고처리
	51.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52. 다량배출사업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리
	53.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관리 운영 업무
	54. 음식물류폐기물 RFID 시스템 유지 및 관리
	55. 친환경 미생물 보급 및 관리 업무
	56. 청라자원화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업무
	57.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청라·송도) 관련 업무
	5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연구 용역 업무
	59.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따른 세대수 관리
	6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별표 3]

### 출장소 사무분장표(제11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검 단 출 장 소	1. 출장소내 행정의 종합조정
	2. <b>서무, 보안, 복무,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b>
	3. 문서관리
	4. 회계관리 및 물품출납 보관
	5. 공보, <b>홍보</b> , 문화재 보호관리, 출판, 향교, 사찰,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6. 기부금품 통제
	7.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공채·지방채에 관한 사항
	9. 국·공유재산관리
	10. <b>세무 민원 발급 및 민원상담</b>
	11. 상수도, 자연보호, 수질보전에 관한 사무
	12. 농지개량에 관한 사무
	13. 환경, 위생, 산업, 상공에 관한 사항
	14.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
	15. 건설에 관한 사무
	16. 건축에 관한 사무
	17. 자연재해 방재대책
	18. 보안등에 관한 사무
	19. <b>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b>

[별표 4]

## 동 사무분장표(제13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동	1. 인사, 복무, 보안,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직 및 비상근무
	3. 통·반 구역 확정, 통·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자생단체 등 각종 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인감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증명 신고 사실확인 및 증명의 경유에 관한 사항
	10. 동재산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신·증축, 대수선을 제외한 동 주민센터 청사 시설물 정비 관리
	12. 각종 행사 참가, 간행물 배부에 관한 사항
	13. 법령 기타 공지사항의 공지 및 주민 여론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4. 취학아동 사무
	15.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보호에 관한 사항
	16.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7. 어디서나 민원에 관한 사항
	18.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
	19.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
	20.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사항
	21. 찾아가는 복지상담에 관한 사항
	22.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 및 지시된 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1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3.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본청과 검단출장소 세무 업무 통합에 따른 위임사무조정 및 그 외 위임사무명 변경 및 근거법령 정비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2. 주요내용

-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
  -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업무 삭제
- 그 외 위임사무 및 근거 법령 정비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개정이유

- 분청과 검단출장소 세무 업무 통합에 따른 위임사무조정 및 위임사무 변경 및 근거법령 정비

### 3. 주요내용

-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별표 3)
  -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업무 삭제
- 그 외 위임사무 및 근거 법령 정비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을 “제10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으로 한다.

제2조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 “위법부당하다”를 “위법 또는 부당하다”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위임받은 자의”를 “위임 받은 사람의”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총무과	1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별정직· 관리운영직군·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별표 2]

##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 동조례 제21조 - 동조례 제22조 - 동조례 제23조	
재무과	1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 지방재정법 제100조  -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 조례 제16조 - 동조례 제17조 - 동조례 제18조	
위생과	1	약국의 개설 등록에 관한 권한 가. 약국의 개설 등록 나. 폐업 휴업, 재개업 및 변경 신고 다.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	- 약사법 제20조 - 동법 제22조  - 동법 제76조	
	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계획의 세부계획 수립 나.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 보고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3	건강생활의 지원등에 관한 다음 의 권한 가.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	- 동법시행규칙 제3조	
	4	건강실천협의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실천협의회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위생과	5	보건교육의 실시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	- 동법 제12조	
	6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조건강 실태조사 나.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 동법시행규칙 제18조	
	7	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영양관리 다. 구강건강의 관리 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마.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바.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 동법 제19조	
	8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 동법시행규칙 제20조	
	9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무 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나. 사회복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의 폐쇄등 라.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소)심사 청구 등 마. 정신질환자의 퇴원(소), 임시퇴원(소), 처우개선 명령,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 등 바.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명령 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증 발급 아. 정신질환자 진단·치료비용 정수 및 통지	「정신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29조, 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위생과	10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나.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등  다. 청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별표 3]

##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문화관광 체육과	1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  나. 신고·등록 사항 변경 다. 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마.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영업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동법 제21조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동법 제24조 - 동법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6조	
	2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  나. 신고·등록 사항의 변경 다. 신고·등록증의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라. 행정조치(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8조, 제60조 - 동법 제61조, 제63조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동법 제64조 - 동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99조	
	3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허가  나. 신고·등록·허가 사항의 변경 다. 신고 및 등록·허가증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마.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록·허가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 동법 제25조, 제26조, 제29조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동법 제30조 - 동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8조	
	4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연장의 등록 나. 공연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폐쇄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 공연법 제9조 - 동법 제33조, 제34조	
	5	영화상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화상영의 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무과	1	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 동조례 제21조 - 동조례 제22조 - 동조례 제23조	
재무과	1	구유 잡종재산의 관리 가. 실태조사 나. 대부료,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다. 미수액 채납관리 라. 기타전산입력 처리등	- 지방재정법 제73조	
	2	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 - 동조례 제17조 - 동조례 제18조	
세무1과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납세증명서 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노인장애인 복지과	1	장례식장의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자 등록현황 관리 나.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당 설치 등록 나. 경로당 변경, 휴·폐지 다. 경로당 운영지도	- 노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3	장사등에 관한 다음사항 가. 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  나. 사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납골묘, 납골탑의 신고·허가 및 사후관리 다. 무연분묘의 개장 및 처리 라. 묘지이전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등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같은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같은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위생과	1.	<p>공중위생영업(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변경) 및 폐업</p> <p>나. 공중위생영업의 승계</p> <p>다. 공중위생영업소지도단속</p> <p>라.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p> <p>- 같은 법 제3조의2</p> <p>-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9조의2</p> <p>-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p>	
	2	<p>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영업허가 등</p> <p>나. 영업 승계</p> <p>다. 출입·검사·수거 등</p> <p>라.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p> <p>마. 벌칙</p>	<p>- 식품위생법 제37조</p> <p>- 같은 법 제39조</p> <p>- 같은 법 제22조</p> <p>-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p> <p>-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102조까지</p>	
자원순환과	1	<p>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p> <p>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점검</p> <p>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운반차량등록 및 반입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 업무 등 기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관련된 사항</p>	<p>-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6조, 제45조, 제48조</p> <p>-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p> <p>- 동법 제39조</p> <p>- 동법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p> <p>- 기타 폐기물 관리법에 관련된 규정</p>	
	2	<p>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신고</p> <p>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 지도 감독 및 점검</p> <p>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운반차량등록 및 반입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 업무 등 기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와 관련된 사항</p>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 19조, 제34조</p> <p>- 동법 시행규칙 제9조</p> <p>- 동법 제34조</p> <p>- 동법 제61조, 제63조 내지 제66조</p> <p>- 기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규정</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경제에너지 과	1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 농지법 제8조	
	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 분통지서 발급	- 농지법 제10조제1항	
	3	농지원부 작성 및 등본발급	- 농지법 제51조,제52조	
	4	일반소유 상환초과농지 소유인정서 발급	- 농지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 제 6조제1항	
	5	대리경작자의 지정	- 농지법 제19조제1항	
	6	자경증명 발급	- 농지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 칙 제54조	
	7	농지검사 및 조사	- 농지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57조	
	8	농지 전용신고	- 농지법 제37조제1항	
	9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전용 허가	- 농지법 제36조제1항	
기업지원과	1	공장입지 기준 확인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9조	
	2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설립등의(신설,증설,업종 변경,이전)승인 및 변경승인 나. 공장설립승인사항 변경 신고 다. 제조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라.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13조, 제20조 - 동법 제13조 - 동법 제14조의3 - 동법 제14조의3	
	3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 동법 제15조	
	4	공장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 부분등록 나. 건축물 등록 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동법 제16조 - 동법 제16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5	공장이전의 확인	- 동법 제21조	
	6	기존공장폐쇄 확인	-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7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설,증설 승인 및 변경승인 나. 완료(변경완료) 신고	- 동법 제28조의2 - 동법 제28조의2	
	8	공장설립대장 관리	-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0조제4항	
	9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취소 다. 공장의 등록취소	- 동법 제13조의5 - 동법 제14조의4 - 동법 제17조	
	10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	- 동법 제55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축과	1 2 3 4 5 6 7 8 9	1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고발포함)등 2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3 동당 연면적 1,000㎡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4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사항변경 포함)신고의 수리 5 가설건축물 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및 관리 6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7 건축(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착공신고의 수리 나. 사용승인서 교부 8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수리 9 건축물대장 관리 및 등본발급	- 건축법 제79조, 제81조, 제82조 - 건축법 제80조, 제80조의2, 제113조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9조 -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제83조 - 건축법 제21조 - 건축법 제22조 - 건축법 제36조 - 건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도시재생 경관과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나. 광고물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등에 관한 사항 라.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바. 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사.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의 취소 아.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 자. 허가·신고·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 징수 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9조 - 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39조 - 동법 제10조 -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 동법 제13조 - 동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 - 동법 제17조 - 동법 제20조 - 동법 제20조의2	

## [별표 4]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8조,제19조, 제20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다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세무1과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목별과세증명서 나.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생활보장과	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노인장애인 복지과	1	매·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여성보육과	1	<b>한부모가족</b> 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저소득 <b>한부모</b> 가정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나. 저소득 <b>한부모</b> 가정 일제조사 다. 저소득 <b>한부모</b> 가정 자녀학비 지원, 변동사항 확인 라. 저소득 <b>한부모</b> 가정 변동사항 관리	- <b>한부모가족지원법</b> 제10조,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2	<b>한부모가족</b> 증명서 발급	- <b>한부모가족지원법</b> 시행규칙 제3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자원 순환과	1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권한 가. 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나. 봉투판매소 변경사항 신고		
	2	동 배치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3	이면도로 청소업무	-폐기물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	
	4	주택가 무단투기 단속업무	-폐기물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제63조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에 관한조례제17조 내지제25조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개정이유

- 재위임 사무 및 근거법령정비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3. 주요내용

- 재위임 사무 및 근거법령정비(보건소, 출장소, 동)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규칙”을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인천광역시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문화회관장, 출장소장”을 “출장소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위법부당하다”를 “위법 또는 부당하다”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재위임받은 자”를 “재위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규	비고
위생과	1	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항 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다. 도매상의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항	
	2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관한규칙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3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5조	
	4	의료기관병원, 부속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소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종합병원 제외) 가. 개설허가 (신고) 및 사항변경 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다.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및 개수명령 라. 폐쇄, 업무정지등 처분 마. 조산소의 지도의사신고 바. 보고와 업무감사 사. 부정의료업자단속 아. 의료지도원임명 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의료법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제27조, 제28조 의료법 제40조 같은법 시행 제30조 같은법 제63조 같은법 제64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61조 같은법 제64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84조	
	5	의약품판매업(한약종상, 약종상, 매약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한약방 영업소이전 나. 허가사항 변경허가 다. 허가취소와 업무정지등 처분 라. 의약품판매업허가증 갱신	약사법 제45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80조	

6	<p>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판매업자 또는 관리자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p> <p>나. 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p> <p>다. 폐업등의 신고</p> <p>라. 마약류 양도의 승인</p> <p>마. 구입서및판매서교부</p> <p>바.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p> <p>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p> <p>아. 허가 등의 제한</p> <p>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p> <p>차. 출입,검사 및 수거</p> <p>카. 폐기명령 등</p> <p>타. 업무보고 등</p> <p>파.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p> <p>하. 마약류감시원의 임명</p> <p>거.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임명</p>	<p>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p> <p>같은법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p> <p>같은법 시행규칙 제8 제2항</p> <p>같은법 제9조 제2항, 제3항</p> <p>같은법 제10조</p> <p>같은법 제12조</p> <p>같은법 제13조</p> <p>같은법 제37조</p> <p>같은법 제40조</p> <p>같은법 제41조</p> <p>같은법 제42조</p> <p>같은법 제43조</p> <p>같은법 제44조</p> <p>같은법 제48조</p> <p>같은법 제49조</p>	
7	<p>치과기공소·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개설등록</p> <p>다.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및 등록사항변경신고, 양도양수</p> <p>라. 행정처분 및 청문</p> <p>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1조의2, 제12조</p> <p>같은법 제13조</p> <p>같은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p> <p>같은법 제33조</p>	
8	<p>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p> <p>나.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교부</p> <p>다. 안경업소 등록사항변경 및 휴·폐업신고수리</p> <p>라. 안경업소의 지도감독</p> <p>마.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p> <p>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의료기사법 제13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p> <p>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p> <p>같은법 제13조의 5</p> <p>같은법 제13조의 6</p> <p>같은법 제13조의 7</p> <p>같은법 제13조의 8</p> <p>같은법 제17조의 3</p>	
9	<p>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시체의 해부</p> <p>나. 시체 해부 명령</p>	<p>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p> <p>같은법 제6조</p>	

10	<p>감염병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역학조사</p> <p>나. 건강진단</p> <p>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등</p> <p>라. 감염병위기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등</p> <p>마. 감염병 관리 시설 평가</p> <p>바.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p> <p>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p> <p>아. 감염병 환자등의 입원 통지</p> <p>자. 감염병유행에 대한 방역조치</p> <p>차. 감염병의 예방 조치</p>	<p>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p> <p>같은법 제19조</p> <p>같은법 제36조</p> <p>같은법 제37조</p> <p>같은법 제39조의 2</p> <p>같은법 제41조</p> <p>같은법 제42조</p> <p>같은법 제43조</p> <p>같은법 제47조</p> <p>같은법 제49조</p>	
11	<p>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p> <p>나. 예방접종의 공고</p> <p>다.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p> <p>라. 예방접종증명서 교부</p> <p>마.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p>	<p>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p> <p>같은법 제26조</p> <p>같은법 제26조의 2</p> <p>같은법 제27조</p> <p>같은법 제28조</p>	
12	<p>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p> <p>나. 영업의 휴업, 폐업, 폐업신고</p> <p>다.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p> <p>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p> <p>마. 소독업무의 대행명령</p> <p>바. 소독실적 보고</p>	<p>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p> <p>같은법 제53조</p> <p>같은법 제59조</p> <p>같은법 제58조</p> <p>같은법 제56조</p> <p>같은법 제57조</p>	
13	<p>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감염자의 치료권고</p> <p>나. 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조치등</p>	<p>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p> <p>같은법 제14조</p> <p>같은법 제15조</p>	
14	<p>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임신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p> <p>나. 산후조리업 신고</p>	<p>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p> <p>같은법 제15조</p>	

[별표 3]

##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 설 과	1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법 제24조	
노인장애인 복지과	1	공설묘지의 운영관리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제 에너지과	1	양곡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대규모 도정업에 관한 권한제외) 가.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나. 청문 다.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 라. 과태료 부과징수	- 양곡관리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 동법 제28조 - 동법 제21조  - 동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2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중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협의에 관한 사항	- 농지법시행령 제39조	
	3	불법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 농지법 제44조	
	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권한	- 농지법 제38조	
기업지원과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28조	
	2	「계량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나.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 또는 수입의 신고 다.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라. 계량기 자체수리 인정 마. 실량표시 상품의 검사 바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단, 30톤이상 전기식저울 및 눈새김 탱크로리 정기검사는 제외) 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같은 법 제6조제2항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30조 및 제31조  - 같은 법 제13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설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2개구이상 해당되는 점용허가는 제외) 가. 도로점용허가 나. 도로예정지 점용허가  다. 접도구역관리 라. 도로부지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마.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바. 도로점용지의 원상복구 면제승인 사.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아. 공작물 설치허가(시도 및 준용도로에 한함) 자. 도로환경정비 차. 도로부지점용(굴착)허가	- 도로법 61조, 동법시행령 제54조 - 동법 제27조  - 동법 제40조 - 동법 제106조, 동법시행규칙 제50조 - 동법 제66조  - 동법 제73조 - 동법 제65조 - 동법 제61조  - 동법 제50조 - 도로법 61조, 동법시행령 제54조	
	2	지방2급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권한(공작물 관계제외) 가. 권리·의무의 승계등의 신고 나. 법령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 하천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 동법 제64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3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한 시설물자의 사용 또는 수용폭원에 관계없이 도로에 관한		
	4	다음의 사항 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도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제3조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및 보도 유지관리 나. 사도개설허가 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도로 및 도로부속물, 비포장도로, 공작물, 긴급복구, 설해대책)	- 「도로법」 제31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사도법 제4조 - 「도로법」 제50조	
	5	공공하수도의 유지와 공사 가. 폭 20M미만 도로의 하수도유지 및 공사관련 사항 나. 연면적 1,000㎡이하 건축허가에 따른 공공하수도 및 배수시설물의 사용 및 유지와 공사에 관련한 사항	- 하수도법 제7조 및 제8조	
	6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나. 공공하수도의 감독	- 하수도법 제20조 - 동법 제37조	

[별표 4]

## 등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경제 에너지과	1	가축방역 추진사항 가. 광견병등 방역대상 조사 나. 광견병 예방접종등 방역추진 다. 예방접종 결과보고 등 기타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행정권한</u>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u>인천광역시</u>시장으로부터 <u>구청장</u>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문화회관장, <u>출장소장</u>,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임사항) <u>구청장</u>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u>보건소장</u>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u>출장소장</u>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u>동장</u>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와 같다.</p> <p>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u>구청장</u>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u>위법부당</u>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p> <p>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u>의하여</u> 재위임된 사무는 <u>재위임받은 자</u>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p>	<p><u>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u></p> <p>제1조(목적) ----- 「<u>행정권한</u>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u>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u>」 제2조에 따라 <u>인천광역시</u>시장으로부터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u>-- 사무 중 -- <u>출장소장</u>----- ----- ----- ----- -----.</p> <p>제2조(위임사항)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u>(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에게 <u>권한위임된 사무</u> 중 ----- ----- ----- -----.</p> <p>제3조(지휘감독) ----- <u>따라</u> ----- ----- ----- ----- <u>위법 또는 부당하다</u>----- ----- -----.</p> <p>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 ----- <u>따라</u> ----- ----- <u>재위임 받은 사람</u>----- -----.</p>